

미성년자 입양 승낙서(13세 미만)

1. 미성년자 입양 청구 관계인

1. 구분		2. 성명	3. 주민등록번호	
미성년자 입양	양부로 될 자	박ㅇㅇ	-	
청구인	양모로 될 자	া ০ ০	_	
양자로 될 자		김ㅇㅇ	_	
양자로 될 자의	친생부	김△△	_	
친생부모	친생모	윤□□	-	

2.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

위 양자로 될 자 김○○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부 김○○, 친권자 모 이□□ 는, 양자로 될 자가 13세 미만이므로 민법 제869조 제2항에 따라 양자로 될 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 입양 청구인들이 양자로 될 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을 승낙합니다.

20

구분	입양승낙인 성명	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승낙 여부	서명 또는 날인
법정대리인 친권자 부	김ㅇㅇ	승낙함	
법정대리인 친권자 모	0]	승낙함	

☞ 유의사항

- 이 서류의 제출자가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(단, 미성년자 입양 동의서에 작성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이미 첨부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 부할 필요가 없습니다).
- 단독입양인 경우,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 또는 모 1명인 경우에는 위 내용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